

1. 개정 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및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권한위탁기관 명칭 변경(제4조내지 제10조,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 일부 개정)

* 한국상하수도 협회→ 한국물기술인증원

나. 인증신청시 유사제품 모델명을 모두 기재토록 신청서식 개정(제9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한다.

제7조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협회는”을 각각 “인증원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회”를 “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인증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협회”를 “인증원”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인증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각각 “인증원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인증이 취소된”을 “인증을 취소한”으로, “인증정보망”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협회”를 “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인증원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협회의 행정행위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 인증원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원에서 행위한 것으로 본다.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신규인증□/정기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회사현황	자본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출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영업이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투자비 (교육·훈련비/C)	백만원
	종업원수 (C)	경영간부	명	연구·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A)	%
		기술직	명	공정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무직	명	설비자동화율 (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기타	명		
계		명			

신청
제품

제품명			
인증번호		(정기검사일 경우 작성)	
직전 인증일		(정기검사일 경우 작성)	
종류, 등급, 호칭 (모델명) *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의 모델명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	
HS 코드	□□류, □□□□.□□-□□□□	G2B 코드	□□-□□-□□-□□-□□□□□□□□

신청 제 품 의 타 기 관 인 증 상 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 (유효기간)	표준명	표준번호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제11조의3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 인증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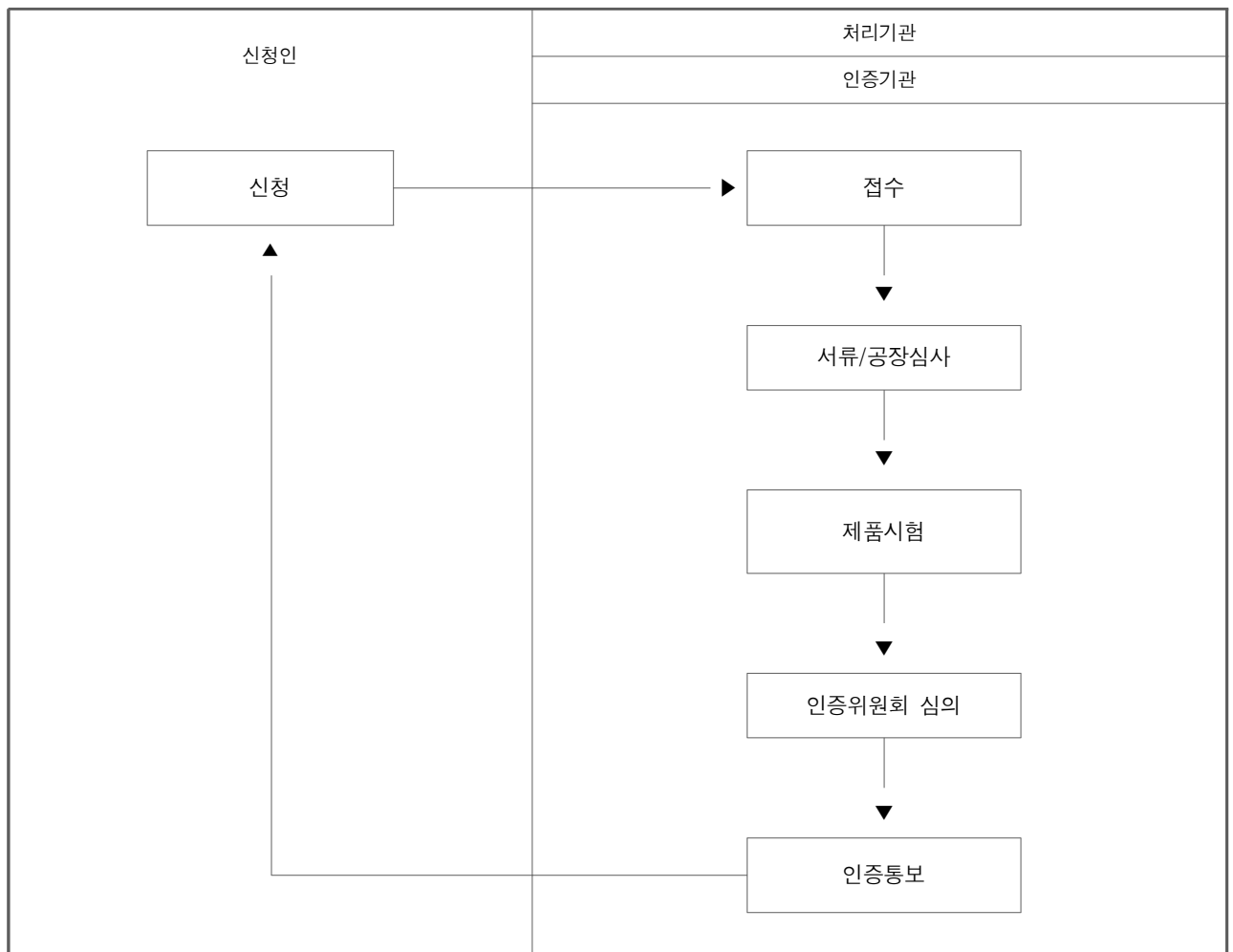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첨부서류	가.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1부 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부품도 포함한다) 명세서 1부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 (신청 품목에서 접촉면적비가 가장 큰 제품) 마. 제조·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바. 별표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신청제품 사진(완제품 및 제품 분해 등)
단,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증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4. 본사 주소:

5. 공장 소재지:

6. 제품명:

7. 인증상세사항 : 뒷쪽 참조

8.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재료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직인

(뒤쪽)

<인증상세사항>

종류 및 등급	호 칭 (모델명)	재 질

*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 모델명은 같이 기재 함

<변경사항>

년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년 월 일	내 용	확 인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1. CERTIFICATE NUMBER :
2. MANUFACTURER :
3. OWNER :
4. LOCATION OF HEAD OFFICE :
5. LOCATION OF FACTORY :
6. PRODUCT :
7. TYPE :
8. US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nitation and safety products described above have been produced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cation Date :

Certified by _____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20, Gukgasandan-daero 40-gil, Guji-myeon, Dalseong-gun, Daegu, Korea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	-----	----------

신고인	제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본사 주소	
	공장 주소	

인증제 품	인증번호 및 인증일
	인증제품명
	인증제품의 종류 및 등급
	인증제품의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충용 재료
	인증제품의 호칭

변경사유	[] 생산시설 및 공정 변경 [] 생산공장 이전 [] 재질 및 호칭(모델명) 변경
------	--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연 월 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인증기관	→	서류/공장심사 인증기관	→	제품시험 검사기관	→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	인증통보 인증기관
---------------	---	-------------	---	-----------------	---	--------------	---	---------------	---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본사 주소		
	공장 주소		
인증제품	인증번호 및 인증일		
	인증제품명		
	인증제품의 종류 및 등급		
	인증제품의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		
	인증제품의 호칭		
재발급사유	☐ 대표자 변경 ☐ 상호변경 ☐ 인증서 훼손·분실 ☐ 그 밖의 사항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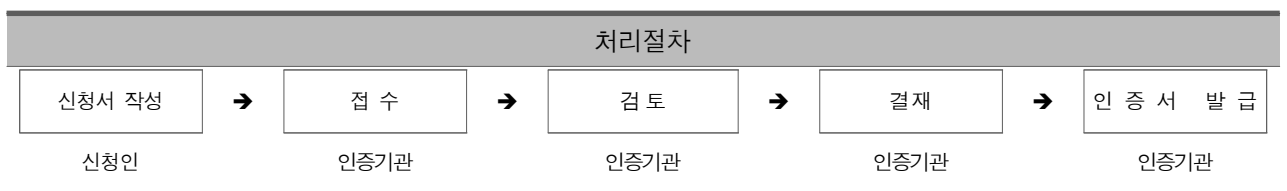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분실한 경우 해당 없음) 1부 2.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u> 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 <u>협회</u>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 신청) ----- ----- ----- <u>첨부</u> 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 <u>인증원</u> "이-----.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u>협회는</u>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인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u>인증원은</u> ----- ----- ----- ----- -----.
<u><신 설></u>	③ <u>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 규정으로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공장심사) ① (생략)	제6조(공장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협회는</u>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u>인증원은</u>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
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7조(제품시험) 협회는 제품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
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협
회는 인증심의 결과 위생안전기
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
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
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
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
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품시험) 인증원은 -----

-----.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
증원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원은 -----

-----.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
다. 다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
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
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
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 인증원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인증원은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인증서의 반납) -----

----- 인증원 -----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협회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협회는 수시검사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

----- 인증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

----- 인증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원은 -----

망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협회는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4조(인증 취소의 게재) 협회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증서 재발급) -----

----- 인증원 -----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은 -----

-----.

② 인증원은 -----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증 취소의 게재) 인증원
은 ----- 인증을 취
소한 -----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정
보망-----

	----- ----- ----- -----.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u>협회</u> 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① ----- ----- ----- ----- <u>인증원</u> ----- -----.
② <u>협회</u> 는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 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u>인증원은</u> ----- ----- ----- ----- ----- -----.
제17조(보고) <u>협회</u> 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7조(보고) <u>인증원은</u>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